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축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축의 열악한 사육 환경 등이 가축 질병, 축산물 안전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규 닭·오리·돼지 사육업 허가·등록 요건 중 사육시설 요건을 보완하고,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시설면적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 1)

1)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할 것

2)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할 것

나.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시설면적 산정방법을 개선함(안 별표 1)

다.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나)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한우·육우) 등록을 한 농장에 한해,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에서 태어난 8개월령 이하 소는 마리당 시설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가)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라)를 (마)로 하며, 같은 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종돈 사육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축양육실은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라)를 (마)로 하며, 같은 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별표 1 제2호가목4)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 중 “가축”을 “돼지”로 하며, 같은 란 (가) 중 “가축”을 “돼지”로 하고, 같은 란 (나)를

(다)로 하며, 같은 란 (다)(종전의 (나)) 중 “가축”을 “돼지”로 하며, 같은 란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돼지 사육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축양육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가목4)다)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나)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i)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ii)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iii)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별표 1 제3호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추어 것

(나) 돼지,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시설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할 것

(2) 가축 사육시설 없이 사슴·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제2호너목부터 커목까지는 1년으로 한다)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돈업 및 종계업·종오리업, 돼지 및 닭·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돼지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하여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 같은 목 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나), 같은 목 4)다)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가) 및 제3호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 같은 목 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나), 같은 목 4)다)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가) 및 제3호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기금의 용자)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 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u>새마을금고연합</u> <u>회</u>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 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용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 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용자) ① ----- ----- ----- ----- ----- ----- <u>새마을금고중앙회</u>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3)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축 및 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액등처리업은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 · 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 (2) 송아지는 젖을 떼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한우·육우) 등록을 한 농장에 한해,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에서 태어난 8개월령 이하 소는 마리당 시설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	8.3	8.3	6.4	4.3

비고

1. 경산우: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2. 착유우: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3. 건유우: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4.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5. 깔짚 방식: 한우·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6. 프리스톨 방식: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나) 일관경영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시설 형태	깔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톨 방식
마리당 면적	12.8	8.6	9.0

비고

1. 계류식: 착유우사·건유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틀 방식: 착유우사는 프리스틀,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 (2) 송아지는 젖을 떼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중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 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돼지(교배에 활용되는 수돼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돼지
5. 중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돼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돼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떼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m²)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떼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4)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경영 형태(유형)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
번식경영-1	번식 → 분만
번식경영-2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비육경영-1	새끼돼지 → 비육
비육경영-2	비육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종계 · 산란계	케이지 (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0.075m ² /마리	
	평사	9마리/m ²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 ² /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창문이 없는[무창(無窓)]계사	39kg/m ²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m ²
		자연환기	33kg/m ²

	케이지	0.046m ² /마리	
--	-----	-------------------------	--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 (2) 시설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케이지 한 칸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 (3)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 (4) 종계·산란계의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성장단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m ² /마리	
육용 오리	0.246m ² /마리	창문이 없는 시설[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m ² /마리 적용

비고

고상식 시설: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2. 축산업의 허가 요건

가. 축사, 약취저감 장비·시설 등의 설치·구비 기준

1) 종축업

가) 종돈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 “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추는 것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포유·육성)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 종돈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라) 종돈 사육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축양육실은 제외한다. (마) 종돈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외부에서 들어온 종돈을 일정 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한 후 들어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돈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 사육시설을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된 별도의 건물에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는 것
악취저감 장비·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는 것 (1)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된 액비(液肥: 액체 비료)를 임시분뇨보

	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飲水)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건설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나)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종계·종오리 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사육시설	(1)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계·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부화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라)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마)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종계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출 것 i)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ii)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iii)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출 수 있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이동통로 등 장비·시설	종오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종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종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 (2)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 또는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계 또는 종오리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	---

2) 부화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란	종계육종회사·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원종오리장에서 발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부화 시설	(1)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가)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나)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2)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사육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기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부화장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2)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한다) 대장을 갖출 것

3) 정액등처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및 정액 등	(1) 소 (가)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씨수소를 1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 i)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일 것 ii)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을 것

(나)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2) 돼지

(가)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돼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

(나) 정액 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 성적에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생존새끼 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농장검정기준으로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이 142일 이내일 것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cm)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일)	1일 체중 증가량 (g)			
		농장			
랜드레이스, 요크셔	135 이하	70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	14 이상
두록					
버크셔,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	155 이하	600 이상			
번식용 씨돼지	132 이하	715 이상			
재래돼지	223 이하	300 이상		2.0 이하	

비고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 이하까지) 또는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 이상부터 90킬로그램 이하까지)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

	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분만 후 죽은 새끼 돼지를 말한다)과 미라(죽은 상태로 태어난 새끼돼지를 말한다)는 제외함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2">분만 회차</th><th colspan="2">보정계수</th></tr><tr><th>랜드레이스</th><th>요크셔</th></tr></thead><tbody><tr><td>1</td><td>1.08</td><td>1.11</td></tr><tr><td>2</td><td>1.04</td><td>1.04</td></tr><tr><td>3</td><td>1.01</td><td>1.00</td></tr><tr><td>4</td><td>1.00</td><td>1.00</td></tr><tr><td>5</td><td>1.01</td><td>1.01</td></tr><tr><td>6</td><td>1.03</td><td>1.02</td></tr><tr><td>7</td><td>1.06</td><td>1.04</td></tr><tr><td>8</td><td>1.08</td><td>1.06</td></tr></tbody></table>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 (다)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돼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 · (나)의 기준에 맞는 씨수돼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사육 시설	(1) 종축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사육시설과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사육시설은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2) 제조실: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3) 사육시설과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4) 외부에서 들어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어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장비	(1)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구 분	기계·기구명	비 고
	채취용	인공 질 1대	소 정액 생산 시 해당
		모형암돼지 1대	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
		채란기 1대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검사용	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	스트로 인쇄기 1대	
	봉합용	스트로 봉합기 1대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2)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인력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살아 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1)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2)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다.		

4)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한우·육우: 500제곱미터 초과 젖소: 640제곱미터 초과	한우·육우: 500제곱미터 이하 젖소: 640제곱미터 이하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착유실 등 (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취막기) 및 방충 시설을 설치할 것 (3)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3)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4)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	

나) 돼지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돼지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나) 돼지 사육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축양육시설은 제외한다. (다) 돼지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외부에서 들어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4)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
악취저감 장비·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 (1) 부속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다)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나)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i)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ii)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iii)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집란실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

(산란계 사육업만 해당한다)	초과인 경우	하인 경우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는 것	
이동통로 등 장비·시설	오리 사육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는 것 (1)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 (2)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기준

- 1)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 방역관리지구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 3)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비고

1. 2) 및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 및 시설의 가축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축산 관련 시설”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

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돼지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소·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이며, 닭·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닭·오리 도축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계장, 종오리장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요건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추어 것 (나) 돼지,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시설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할 것 (2) 가축 사육시설 없이 사슴·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악취저감 장비·시설	돼지 사육업의 경우에는 약품 등을 살포하여 악취물질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 것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제2호가목9)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가축의 재사육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축산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	법 제25조제1	영업의	영업의	영업의 전부

용하게 한 경우	항제3호	전부정 지 1개 월 허가 취소	전부정 지 3개 월	정지 6개월
4)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측 사·장비 등 중 이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측사·장비 등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법 제25조제1 항제4호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3 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 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 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 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 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 으로 퍼지게 한 경우	법 제25조제1 항제5호	허가 취소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 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 한 경우	법 제25조제1 항제6호	영업의 전부정 지 3개 월	허가 취소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 항제7호	영업의 전부정 지 3개 월	허가 취소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 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 항제8호	허가 취소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측사·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 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 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 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	법 제25조제1 항제9호	영업의 전부정 지 1개 월	영업의 전부정 지 3개 월	허가 취소

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0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	---------------	--------------	--------------	-------

나. 가축사육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호	등록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2호	등록 취소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4호	등록 취소		
5)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5호	등록 취소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4조의4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4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법 제34조의4제6호	등록취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 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의4제7호	등록취소		
---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제2호너목부터 커목까지는 1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제2호너목부터 커목까지는 1년으로 한다)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50	500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나.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200	400	800
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100	200	400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	100	200	400
마.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150	300	6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00	200	300
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200	400	8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100	200	400
사.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50	500	1,000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100	250	500

경우				
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5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00	400	8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00	200	400
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6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50	500	1,0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00	200	400
차.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7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00	400	8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법 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		100	200	400
카.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100	200	400
2) 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50	100	200
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5호	100	200	400
파.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6호	100	200	300
하. 법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법 제56조제2항제7호	100	250	500

경우 거.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 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8호	100	200	400
너. 법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 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더. 법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 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0호	30	50	100
러. 법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 우	법 제56조제2항제11호	30	50	100
머.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2호	30	50	100
버.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로서 법 제42조 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경 우	법 제56조제2항제13호	150	300	500
서.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 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 고 변경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4호			
1)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00	200	300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의10제1 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	법 제56조제2항제15호	150	300	500

피한 경우 저.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사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 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6호			
		150	300	500
		100	200	300
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 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 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 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7호			
		100	200	300
		150	300	500
커.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 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8호	150	30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326